

배서금지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박종복/변호사

<질문>

본인은 A가 특허출원중인 전자부품을 A로부터 공급받기로 하 고 A에게 선금금조로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끊어주기로 하였 다. 그런데 만약 A가 특허권을 얻지 못하면 위 5,000만원짜리 약 속어음은 다시 돌려받기로 단단히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도 만약 A가 신의를 깨고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해 버린다 면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에도 본인은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그 방지대책은 없는지.

<답변>

어음이란 그 본질이 무색투명한 것이다.

따라서 어음을 주고받는 사람은 우선 그 어음이 외관상 형식 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발행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그뿐이 지 그 어음이 발행된 당사자간의 내부적인 원인관계까지 모두 조사하여 고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여야만 어음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거래의 안전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설사 귀하가 어음을 발행하면서 A와 사이에 만약 특허권을 얻지 못하면 어음을 다시 돌려받기로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귀하와 A와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 할 뿐이지 A로부터 이 어음을 취득한 제3자에게까지 대항할 수는 없다. 즉 귀하는 위 어음을 적법하게 취득한 제3자에게 약속 어음금 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귀하가 위 어음을 A에게 발행하면서 “지시금지” 또는 “배서금지” 등의 문귀를 써 넣었다면 이를 취득하는 제3자도 위 어음이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없는 어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제3자는 귀하에게 어음금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귀하는 제3자에게도 A에 대한 항변사유 즉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돈 5,000만원을 줄 수 없다는 항변을 할 수가 있게 되어 결국 돈 5,000만원을 빼 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참고로 보통 어음의 표면에는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 되어 있으므로 위 문언중 “또는 귀하의 지시인”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지시금지” 또는 “배서금지”라는 문귀를 써 넣는 방법으로 배서를 금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배서금지” 문귀가 있는 어음을 배서금지어음(어음법 제11조 2항)이라고 한다.